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안 제3조)
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안 제6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요금(안 제7조~제8조)
마. 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 타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재정적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하되 출발지는 구미시 관내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이용, 예약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또는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구미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구미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구미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7. 생략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

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

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11.2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

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 ④ 생략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증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저상버스 구입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추산함.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5차년도 (2017)	합계
구분	세입	0	0	0	0	0	0
	○ 국도비	0	0	0	0	0	0
	○ 시비	0	10,000	40,000	56,000	56,000	162,000
	소계(a)	0	10,000	40,000	56,000	56,000	162,000
세출	○ 차량구입	120,000	120,000	240,000	200,000	0	680,000
	○ 운영비	0	135,000	540,000	765,000	765,000	2,205,000
	소계(b)	120,000	255,000	780,000	965,000	765,000	2,885,000
□ 총 비용(a-b)		-120,000	-245,000	-745,000	-919,000	-709,000	-2,738,000

※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885,000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60,000	60,000	120,000	100,000	0	340,000
도 비	18,000	18,000	36,000	30,000	0	102,000
시 비	42,000	167,000	589,000	789,000	709,000	2,296,000
민 간						
기 타						
합 계	120,000	245,000	745,000	919,000	709,000	2,738,000

5. 부대의견 : 국·도비 보조 및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약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 작 성 자 : 교통행정과장 최 윤 구

【 별표 2 】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

(단위 : 천 원)

연도	산 출 내 역	내 용	소요예산
계			2,885,000
2013	□ 자산취득비 : 120,000(차량구입비 3대)	· 자산취득비	120,000
2014	□ 위탁운영비: 135,000 - 직접인건비(운전인력 6명) $1,772,072\text{원} \times 6\text{명} \times 6\text{월} = 63,794,592$ - 간접인건비(이동지원센터 2명) $1,380,932\text{원} \times 2\text{명} \times 6\text{월} = 16,571,184$ - 간접인건비(관리인력 1명, 제경비 포함) $1,666,667 \times 1\text{명} \times 6\text{월} = 10,000,000$ - 보험료 : $63,794,592\text{원} \times 12.078\% = 7,705,111$ - 차량보험료 : $1,000,000\text{원} \times 3\text{대} = 3,000,000$ - 복리후생비 : $170,000\text{원} \times 6\text{명} \times 6\text{월} = 6,120,000$ - 차량유류비 : $656,833\text{원} \times 3\text{대} \times 6\text{월} = 11,822,994$ - 수도광열비 : $260,000\text{원} \times 6\text{월} = 1,560,000$ - 수리수선비 : $320,000\text{원} \times 3\text{대} \div 2 = 480,000$ - 통 신 비 : $190,000\text{원} \times 6\text{월} = 1,140,000$ - 일반관리비 : 12,806,119 □ 자산취득비 : 120,000(차량구입비 3대)	· 위탁운영비 · 자산취득비	135,000 120,000
2015	□ 위탁운영비: 540,000 - 직접인건비(운전인력 12명) $1,772,072\text{원} \times 12\text{명} \times 12\text{월} = 255,178,368$ - 간접인건비(이동지원센터 3명) $1,380,932\text{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월} = 49,713,552$ - 간접인건비(관리인력 1명, 제경비 포함) $1,666,667 \times 1\text{명} \times 12\text{월} = 20,000,000$ - 보험료 : $304,891,920\text{원} \times 12.078\% = 36,824,846$ - 차량보험료 : $1,000,000\text{원} \times 12\text{대} = 12,000,000$ - 복리후생비 : $17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12\text{월} = 30,600,000$ - 차량유류비 : $656,833\text{원} \times 12\text{대} \times 12\text{월} = 94,583,952$ - 수도광열비 : $360,000\text{원} \times 12\text{월} = 4,320,000$ - 수리수선비 : $500,000\text{원} \times 12\text{대} = 6,000,000$ - 통 신 비 : $5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6,000,000$ - 일반관리비 : 24,779,282 □ 자산취득비 : 240,000(차량구입비 6대)	· 위탁운영비 · 자산취득비	540,000 240,000

연도	산출내역	내용	소요예산
2016	□ 위탁운영비: 765,000 - 직접인건비(운전인력 12명) 1,772,072원×17명×12월 = 361,502,688 - 간접인건비(이동지원센터 3명) 1,380,932원×3명×12월 = 49,713,552 - 간접인건비(관리인력 3명, 제경비 포함) 1,666,667×3명×12월 = 60,000,000 - 보험료 : 411,216,240원×12.078% = 49,666,697 - 차량보험료 : 1,000,000원×17대 = 17,000,000 - 복리후생비 : 170,000원×20명×12월 = 40,800,000 - 차량유류비 : 656,833 원×17 대×12 월 = 133,993,932 - 수도광열비 : 500,000원×12월 = 6,000,000 - 수리수선비 : 600,000원×17대 = 10,200,000 - 통 신 비 : 600,000원×12월 = 7,200,000 - 일반관리비 : 28,923,131 □ 자산취득비 : 200,000(차량구입비 5대)	· 위탁운영비 · 자산취득비	765,000 200,000
2017	□ 위탁운영비: 765,000 - 직접인건비(운전인력 12명) 1,772,072원×17명×12월 = 361,502,688 - 간접인건비(이동지원센터 3명) 1,380,932원×3명×12월 = 49,713,552 - 간접인건비(관리인력 3명, 제경비 포함) 1,666,667×3명×12월 = 60,000,000 - 보험료 : 411,216,240원×12.078% = 49,666,697 - 차량보험료 : 1,000,000원×17대 = 17,000,000 - 복리후생비 : 170,000원×20명×12월 = 40,800,000 - 차량유류비 : 656,833 원×17 대×12 월 = 133,993,932 - 수도광열비 : 500,000원×12월 = 6,000,000 - 수리수선비 : 600,000원×17대 = 10,200,000 - 통 신 비 : 600,000원×12월 = 7,200,000 - 일반관리비 : 28,923,131	· 위탁운영비	765,000